

## 축산물 자조금사업의 중요성과 품목별 추진현황

#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이 필요

박 종 수 자조금 연구회 회장 /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31일 확정된 기본골격의 농업부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한 축산농가 스스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당 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우리 축산물시장은 우리 축산농가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우리 축산물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한의 경쟁 경제체제 하에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이 합리적으로 유통되고 광고·홍보되어 적정가격에 소비자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무한의 경쟁경제체제에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성공적인 축산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성공적인 축산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며, 이 비용을 해당 축산물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해당 축산농기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면, 그 공동 부담금이 바로 축산물자조금이다. 그러므로 양계자조금은 양계산물(계란 또는 닭고기)을 생산하는 양계농기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들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 즉, 양계산물의 소비홍보, 새로운 계란 및 닭고기 제품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계란 또는 닭고기의 소비촉진활동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계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구적인 자금인 것이다.

축산물 자조금사업이 갖는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축산지도자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회를 설득하고, 드디어 2002년 5월 14일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도록 하였다. 동년 11월 14일에는 동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서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제도를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각 축종별 축산단체의 주관하에 임의 또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특히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원 투표를 거치는 등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규정함으로서 자조금의 민주적 조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시도한 축산업계는 양돈산업이며, 양돈산업에서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에 양돈협회와 농협은 공동으로 모든 양돈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돈자조금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2004년 4월 1일부터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돼지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도축장이나 육가공공장 등을 포함한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하기 시작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에 생산자단체간의 갈등도 있었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일부 수납기관 등의 불참조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간에는 양보와 타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이들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수납기관의 참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밖에 한우산업에 있어서도 한우협회와 농협이 한우자조금 공동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조금설치를 위한 대위원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등 한우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계분야에서는 각 생산자단체간의 깊은 갈등과 수납기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의무자조금사업추진을 위한 실마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육계의 경우 각 생산자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하는 것은 육계자조금사업은 어느 특정 생산자단체의 편익을 위한 자조금사업이 아니다. 즉, 대한양계협회나 계육협회의 자조금사업도, 농협중앙회의 자조금사업도 아니다. 대한민국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육계농가들의, 육계농가를 위한, 육계농가들의 자조금사업이다. 육계농가들에 의해 조성된 자조금은 특정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육계농가가 주도하는 별도의 독립된 자조금관리기구에서 운영·관리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계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육계산업관련자 모두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육계자조금사업이 순조롭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다만 계란에 대한 의무자조금사업의 경우 현행법의 규정에서는 수납기관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계란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하장을 통한 계란유통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는 현행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을 통해 계란자조금의 수납기관을 채란계용 사료판매업자(공장)나 채란계 부화장을 통해 거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와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농가들이 적극 참여·요구한다면 여타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동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조금에 의한 계란의 원활한 소비촉진활동을 통해 계란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된다면, 계란생산농가는 물론 양계사료의 생산·판매업자와 부화업자 등을 포함한 채란양계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계란생산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에 사료업자나 부화업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것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연적 과제이다. ■■■